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5-34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16. ~ 2025. 6. 30. (14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상자

성명	주 소	내 용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8번길 4, *동 ***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000원	폐문부재	

5. 내 용

가. 의견제출기한 : 2025. 6. 30.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701)

2025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